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4378		
최초 등록일	2021.11.09.	최종 등록일	2024.09.20.

우성회관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당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 >

대	표	번	호	1	5	9	9	-	1	0	7	6	팩	스	번	호	0	2 -	- 6	0	0 7	_	1	1 5	7
가	맹 사	업 누	서	가		맹		사		업		부	전	화	번	호	1	5	9	9	-	1	0	7	6
주			소		경기도 평택시 새말로 140, 1 층(칠원동)																				
홈	페	0	지	١	wwv	v.ju	ngc	han	nbı	ırg.	con	n	0	0	11	일	j	ung	cha	mb	urg(@gr	nail	.coı	n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가맹사업의 내용
-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7.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연연도 말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우성회관」을 시작한 날
- 2. 「우성회관」의 연혁
- 3. 「우성회관」의 업종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우성회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 5.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우성회관」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 6. 「우성회관」외 가맹본부가 경영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7.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선정기준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기관
-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가맹점 오픈 절차
- 2.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등
- 4. 신용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V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의 "「우성회관」")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우성회관」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가맹희망자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우성회관 외 2 개	경 <i>-</i>	기도 평택시	새말로 140,1층(침	^틸 원동)		
주식회사 우성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에프앤비	2020.11.04	2020.12.01	정우성	1599-1076	02-6007-1157		
	법인등록번호	131311-024	44924	사업자등록번호	807-81-01864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 / 상호		주 소	
특수관계인	정우성(대표이사) /	경기도	평택시 새말로 140,	1 층(칠원동)
역구선계인 (임원)	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82)	우성에프앤비	정우성	1599-1076	02-6007-1157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가 바로 전 3 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업명/영업표지	인수일	주 소	대표자
당사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함	정씨함박 에프앤비 / 정씨함박	2021.03.01	경기도 평택시 죽백 8 길 37, 106 동 401 호(죽백동, 평택소사해링턴코트)	정우성

[☞]당사는 정씨함박 에프앤비로부터「정씨함박」의 가맹사업 운영권을 2021 년 3 월 1 일자로 인수받았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우성회관	-
상 호	우성회관 00점	00 에는 보통 해당 지역명이 표기됨
상표(서비스표)	_	
광 고	_	_
그 밖의 영업표지	우성회관	현재 출원 준비 중 (상표 미등록)

5.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24,014	56,633	-32,619	36,443	-40,372	-34,327
2022 년	18,789	37,091	-18,302	45,813	10,357	14,317

2023년 19,652 36,353 -16,700 44,426	1,598	1,601
------------------------------------	-------	-------

2) 당사는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건먼어구	66	' Ξ'Π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 업무				
		대표	2020.04~2021.02	정씨함박 에프앤비의 가맹사업 운영	경영전반				
가맹사업 관련 임원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	대표이사	2020.11~2023.04	주식회사 정씨함박에프앤비의 가맹사업 양수 및 운영	경영전반	
		= 11 = 17 11	2023.04~현재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 가맹사업 운영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	녹(명)	직원수(명)
ALC:	상근	721(8)	
2023 년 12 월 31 일	1	_	_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우성회관」 가맹사업 외의 가맹 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상호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간	사업내용	
----	-------	----------------	----	------	--

당사	주식회사	정씨함박(20190729)	2021.03~현재	함박스테이크 전문점
3/4	우성에프앤비	달토끼짬뽕(20214380)	2020.12~현재	중식 전문점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우성회관」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 재산권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우성회관」을 시작한 날

당사의 「우성회관」의 가맹사업 시작일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 상기 일자는 제 1호 가맹계약 체결일입니다.

2. 「우성회관」의 연혁

「우성회관」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정씨함박에프앤비	우성회관	정우성	2022.01~2023.04	경기도 평택시 비전 9 길 12-87, 1 층(비전동)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	구 3 외년	0 T 0	2023.04~현재	경기도 평택시 새말로 140, 1 층(칠원동)

[☞]당사는 2023년 4월경 당사의 상호명을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 「우성회관」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우성회관	한식	해장국 등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우성회관」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우성회관」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우성회관」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시크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	_	-	3	3	_	4	4	_	
서울	-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	_	-	-	_	_	-	_	_	
인천	_	_	_	-	_	-	-	_	_	
광주	_	_	_	_	_	-	-	_	_	
대전	_	_	_	-	_	_	-	_	_	
울산	-	-	-	-	_	_	-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	_	3	3	_	4	4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	-	-	-	-	_	-	_
충남	_	-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	-	-	-	-	_	-	_
경북	_	_	_	_	_	-	_	_	-
경남	_	_	_	-	-	-	-	-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우성회관」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당사의「우성회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 년	_	_	_	_	_	-
2022 년	_	3	_	_	-	3
2023 년	3	1	_	_	_	4

6. 기타 가맹사업현황

「우성회관」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고개시	정보공개서 지구 -		병점 및 직영경	덕 수
구분	이름/상호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51.11	주식회사	정씨함박	20190729	외식 (서양식)	5/0	4/0	3/0
당사	우성 에프앤비	달토끼짬뽕	20214380	외식 (중식)	3/0	4/0	3/0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VAT 포함)

당사의「우성회관」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직전 사업연도에 연간 평균으로 올린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0001= UF		2023년	연간 매출액(단위:천원, VA1	「미포함)		산출
지역	2023년 말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	ਰ 상한	연간 평	균 하한	가맹점
	가맹점수	매출액	면적	상한	면적	하한	면적	수

			3.3㎡당		3.3 ㎡당		3.3 ㎡당	
전체	4	342,000	8,825	456,000	11,200	240,000	7,728	4
서울	-	-	-	-	-	-	-	-
부산	-	_	-	-	-	-	_	_
대구	_	_	_	_	_	_	_	_
인천	-	_	-	_	-	-	_	-
광주	_	_	-	_	_	-	_	_
대전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	_	_
세종	_	_	_	_	_	_	_	_
경기	4			해당 없음	(5개 미만)			4
강원	_	_	_	_	-	-	_	_
충북	-	_	_	_	-	-	_	_
충남	_	_	_	_	-	-	_	_
전북	_	_	_	_	-	-	_	_
전남	-	_	_	_	-	-	-	_
경북	-	_	-	-	-	-	-	_
경남	-	_	-	_	-	-	-	-
제주	-	_	-	_	-	-	_	_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각 가맹점의 POS 자료 및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연평균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 별로 물품 공급량,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로스율, 시공 매뉴얼 준수 정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기준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매출 및 미래 수입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우성회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4	493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우성회관」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우성회관」가맹사업과 관련된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우성회관」가맹사업과 관련한 지출액은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기 간	금액(단위:원)	비고
광고선전비	さ る)E	(धस्य)	1,765,300	당사 100% 부담
	합 계		1,765,300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고
보험상품명	프랜차이즈보증보험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	
피보험인(보험금수령인)	가맹점사업자	
보험범위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포함기선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개시일까지)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등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이의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우성회관」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의 부담이 필요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하는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안함(보증보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안함(보증보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 안함(보증보험)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

가.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내역 (VAT 포함)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가입비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대가 	8,800,000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7,700,000 (1 인당 55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나.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무료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교육인원 추가 시)	7,7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교육을 위해 소

(1 인당 550,000)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요되는 소멸성
	후 반환	비용

☞ 상기 양수가맹비는 귀하가 기존 가맹점의 계약 잔존기간을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잔존기간의 양수가 아닌 새롭게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가맹계약을 원하는 경우 양수가맹비로 신규 가맹비의 절반을 당사에 지급합니다.

2) 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원) (VAT 해당없음)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면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 과하는 경우

3)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여 예치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중 11.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ᆕᅠᅵ게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 계	16,500,000	7,700,000	
가맹비	8,800,000	무료(잔존기간 양수 시)	
교육비	7,700,000	7,700,000	
보증금(VAT 해당없음)	면제	면제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 대상이 되는 금액에서 다음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아직 당사에 기 지급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당사가 귀하의 개점을 위하여 제 10 조 내지 제 12 조의 공급품을 구입 완료하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매장에 설치·제공 등을 완료한 경우 해당 공급품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고 정보공개서 상의 기준에 따라 당사의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가맹금의 1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10일 이내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가맹금의 30%
계약 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 상의 예치가맹금의 50%

4)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우성회관」가맹사업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33m²(10 평)기준/단위:원/VAT 포함)

=0		비용		TI그기를	반환조건/	
품목	지급대상	금액	3.3 m ² 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16 500 000	1 650 000	계약 시	설치 전 소요비용	
근대디어		16,500,000	1,650,000	개별 협의	공제 후 반환	
간판 및	V-1의	2 200 000		계약 시	설치 전 소요비용	
사인물		3,300,000	_	개별 협의	공제 후 반환	
주방설비		0.000.000		계약 시	미제공시 소요비용	
및 집기		9,900,000	_	개별 협의	공제 후 반환	
초도물품		5,500,000		계약 시	미제공시 소요비용	
소도돌古			_	개별 협의	공제 후 반환	
합 계		35,200,000	3,520,000	3.3 m ² 당 Ē	합계 : 금액합계/기준평수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매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인테리어 비용은 $33m^2(10 평)$ 기준이고, 초과하여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 $3.3m^2$ 당약 1.650.000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③ 상기 간판 및 사인물 비용은 간판의 크기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상기 비용 이외에 매장 건물에 따른 철거, 냉난방기, 의/탁자, 화장실공사, 외부 닥트, 전기승압, 가스설비, 음향, 파사드, 대형/소형 샹들리에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⑤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은 귀하가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 ⑥ 초도물품은 귀하 매장의 성격,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⑦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우성회관」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개점 전 교육과정 이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 만 50 세 이하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9 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원/VAT 포함)	지급시기
----	--------------------	------

011 = 1 = 21 = 11 = 2 (211 0 t = 2)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711.01: =11.74
예치 가맹금(계약금)	16,500,000	7,700,000	계약 체결 시
기타 대금	35,200,000	(일시불)	인테리어 시작 시 100%

[☞] 금전 지급 방법은 상기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 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매월 220,000	매월 말일	후불로 반환 안됨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교육비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개별 청구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50%, 가맹점사업자 측 5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시스템사용료 (POS 사용 시)	가맹 본부	30,000~40,000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 개선비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 개선 비용	가맹 본부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여 개선 비용(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개별 청구	실비로 점포개선 후 반환되지 않음

[☞] 귀하는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에게 미지급 금액의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3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함)의 2023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 2023 년)	내용(단위 : 천원, %)
가맹점 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0
가맹점 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0

[☞]상기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액가맹금은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회계자료등'이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당사와 협의를 통하여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점포이전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금액 (단위: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비		면제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우성회관」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가.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우성회관」가맹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권의 사용을 중지 하여야 합니다.
- 나.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다. 상기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상의 위약금,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우성회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규격)	공급가격 (단위:천원, VAT 포함)	강제/권장	구분
별첨 3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별첨 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우성회관」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름/상호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우성회관」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나. 당사는「우성회관」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사항 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우성회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0 0 0 0	MC40 X 10	707 70	0,12

당사가 제공한 메뉴 또는 레시피에 의하여 조리된 메뉴 품목 (별첨 4 참조)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왼쪽에 기재된 상품 2회 위반: 1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해지 절차 준용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귀하에게 상기 표에 기재된 판매 서비스 품목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전략적 개선. 경쟁업체의 출현 또는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환경 및 법률환경의 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및 가맹점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기존 판매 서비스 품목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당사가 지정한 판매 서비스 품목을 판매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당사 및 타사 가맹점 등 사업자	당사가 제공한 메뉴 또는 레시피에	거래상내망에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가맹사업법의
기타 경쟁관계 사업자	의하여 조리된 메뉴 품목(별첨 4 참조)	해당 상품용역 판매 불가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해지 절차 준용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방법	비고
당사가 제공한 메뉴 또는 레시피에 의하여	별첨 4 참조	전자/서면 방식으로	가맹사업법의
조리된 메뉴 품목(별첨 4 참조)		귀하에게 수시 통보	해지 절차 준용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메뉴제공)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따라 「우성회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서 제 6 조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및 당사의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계열회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일업종이란 V-7.의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을 말합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V-7.에서 경업이	가맹본부	계열회사 등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금지되는 업종	우성회관	해당 없음	

☞ 영업지역 보호 제도는 당사가「우성회관」과 사업형태가 동일한 업종 외의 다른 브랜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그 다른 브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으로부터 직경 1,000M(반경 500M)를	별지에 영업지역
범위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 후 그 범위를 지도로 표시	표시하여 그 범위를
(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 설정함)	명확히 함

- ☞ 귀하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여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가맹계약서 제 6 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의 현저한 변동 등) 또는 이에 준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자(임직원)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하고 합의 후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 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제6조에따라 당사가 조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우성회관」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1) 가맹계약기간

「우성회관」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입니다. 갱신 시에도 **2 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	1.150. 011
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	
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D 190 . D 00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D_6091 0174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으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7조 2항 각호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	
다.)	

4) 계약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 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 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 2항	25조
가영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내표자 등의 가영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용을 점의도 현정하는 경우	및 3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및 31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 4항	조 1
가맹점사업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사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거부 또는	CT 0≅L	항 1
협조하지 않는 경우	6조 8항	호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17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조 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강제/권장 품목을 사용하지 않	21조 2항	
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 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 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강제/권장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		
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기메져 비어 파 가 저다워 비 이 어이 나 중 비성 티스로 가벼워도 거야	27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및 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 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30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6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0조 7항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 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	25조 21호	5
일성을 저해할 경우	2311 213	<u>r</u>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 1항 2	2호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1조 4항 각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 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101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당사 담
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
신규가맹계약 조건	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부담 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 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우성회관」과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우성회관」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해장국 등 메뉴를 주류 및 음료와 함께 홀/배달 방식으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한식 전문점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우성회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1:00 ~ 20:00	월 25일 이상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변경 중립한 구	기정점사업자의 중입장 근무 어구

원활한 고객서비스 제공과 적정 매출액 달성을 위하여 매장 내 3명(홀 1명, 주방 2명)의 근무를 권장함 (매장의 고객 수와 매출상황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재량적으로 근무인원 결정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서 직접 근무가 필수임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완료	수시	
POS사용 (POS 사용시)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사용 상태점검→ 가맹점방문 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기기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 → 기기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서비스	담당자 매장 방문 → 접객 서비스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 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

1)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한 후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 –		= . _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 70% / 가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 액 통지(광고 2개월 전)→가맹점 동의
	상품광고 등			→분담금 납입요청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내 납입→광고시행→결과통보
	가맹점모집광고	100%	_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판매 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통지 (판촉 1개월 전)→가맹점 동의→분담 금 납입요청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 분담금 납입→판촉시행→결과통보

[☞] 가맹사업법 상의 동의절차를 완료한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당사는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벌 등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17 조(비밀유지 의무), 제 18 조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삼천만원(3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맹계약서 제33조 제1항
귀하가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공급품에 대하여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일천만원 (10,000,000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2항
귀하가 제 31 조 제 2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오백만원(5,00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 일 금삼십만원 (300,000원)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33조 제4항
귀하는 당사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5항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한 위약벌 및 제 5 항의 손해배상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 제6항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귀하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귀하의 영업기간 동안 당사에게 지불한 직전 3 개월간 월평균 물품대금의 5% 금액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불하며 이는 제 33 조의 위약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제7항
본 계약에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37조 제1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1599-1076) 또는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1 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_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이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 시 실시	Ⅳ.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중 1.영업개시 이전 부담 금전지급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 자리)	2 일	방법 참조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3 일	
인테리어 등 공사	- 인테리어 등 공사 실시	20 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4 일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0 일(인테리어 공사 중)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 결정) - 오프닝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거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호 자발적인 조정을 받거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을 통하여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는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중재를 거치기 전에는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중재법」및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중재지는 서울특별시, 중재판정부는 1 인으로 구성하기로 가맹계약을 통하여 합의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재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우성회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 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의 부담 항목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기타 비용은 협의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수 있는 서류 첨부) → 90 일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기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 가능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 90 일 이내 가맹본부 부담액을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사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부터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등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수퍼바이저, 지역관리자, 배송담당자 등을 파견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맹점의 경영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지도의 범위

- 1.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명성 유지 여부 확인
- 2. 표준화(Standardization):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의 유지 및 각 메뉴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해설 및 지도
- 3.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대한 지도
- 4. 판촉(Sales Promotion): 신규 고객 창출 및 판매 촉진활동 지도
- 5.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귀하는 당사의 효과적인 경영지도를 위하여 당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지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하는 상기 경영지도의 범위에 의한 경영상의 정당한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당사에게 귀하 자신의 점포에 대한 특별 경영지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귀하로부터 특별 경영지도 요청을 받은 당사는 경영지도 계획서를 귀하에게 제시할 수 있고 경영지도 결과 및 개선방안을 귀하에게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창업대출은 하지 않으나 귀하가 원하는 경우 다양한 창업자금 대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등)

5.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경영상 지원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_	-	-	-	-	-
		36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우성회관」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회사소개, 가맹점 운영, 조리교육 등	개별 또는 집단강의		
신규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고객응대, 매장관리, 직원관리 등)	실습교육	20 일	필수교육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우성회관」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 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개별협의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20일 (200시간)	7,700,000(인원 추가 시 1 인당 550,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이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특별 교육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개별협의 협의하여 산정		필요 시 실시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총 1 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현재「우성회관」관련하여 운영 중인 직영점은 없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_	-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천원/VAT 미포함)

2023 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 1 재무사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주방기기/집기, 초도물품

<주방기기/집기>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초도물품>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경기도-

별첨 3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메뉴 및 가격

◈ 우성회관 ◈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1人 수육 왕갈비 해장국 (중간맛, 배문맛, 아주배운맛) 선 지 해장국 (중간맛, 배운맛, 아주배운맛) 소고기 해장국 (중간맛, 배운맛, 아주배운맛) 맑은해장국(선지/소고기)	7.0 16.0 특 20.0 10.0 특 12.0 10.0 특 12.0	곱 창 전골 왕갈비 전골 아롱사태 수육 곱 창 추가 수 육 추가 우삼겹 추가 버섯 / 야채추가 우동사리	중 39.0 대 50.0 (3人가용) (4人가용) 중 45.0 대 60.0 (3人가용) (4人가용) 중 35.0 대 55.0 (3人가용) (4人가용) 25.0 20.0 10.0 6.0 3.0		
강 갈비탕	특 12.0 14.0 특 20.0	라면사리 전골 볶음밥 공기밥 왕만두	2.0 3.0 1.0 4개 5.0 / 8개 9.0		
생면(물/비빔/들기름)세절메뉴	9.0	음료	및 주류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 확인증(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에 의거,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의 「우성회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받았을 확인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구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아래 글자 위에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제공 받았습니다.

정 보 공 개 서	최 종 등 록 일 :	,	년	월	일
0 = 0 = 11 / 11	400 TE		_	_	_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정보공개서 등 제공장소: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 제공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정보공개서 등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주 소:

전화번호:

정보공개서 등 사전제공 확인증(가맹점사업자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에 의거, <주식회사 우성에프앤비>의 「우성회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를 제공받았을 확인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									
구분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_				

아래 글자 위에 동일하게 '자필'로 기재 바랍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제공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서 능톡번.	호:				
정 보 공 개 서 최 종 등 록	일:	년	월	일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	시 :	년	월	일	Д
정보공개서 등 제공장	소:				
정보공개서 등 제공	자 :		J	서명(또는	기명날인)

정보공개서 등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주 소: 전화번호: